

헌혈의 적합과 부적합(Ⅱ)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원장, 의학박사 / 김 춘 원

클 신는 순서

- ① 혈액이란 무엇인가?
- ② 혈액은 우리 몸 속 어느 곳에서 만들어 지는가?
- ③ 혈액의 역할과 그 운명
- ④ 혈액과 생명의 관계
- ⑤ 혈액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일까?
- ⑥ 혈액형의 종류
- ⑦ 수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 ⑧ 한국의 수혈은 언제부터
- ⑨ 매혈과 헌혈
- ⑩ 헌혈된 혈액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 ⑪ 헌혈의 적합과 부적합
- ⑫ 수혈로 전파되는 질병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에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 미달자(개정 2007.3.6)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건강진단관련 요인 : 체중이 남자에서는 50kg미만, 여자는 45kg미만인 자, 체온이 섭씨 37.5℃를 초과하는 자, 수축기혈압이 90mm(수은주압)미만 또는 180mm(수은주압)이상인 자, 이완기혈압이 100mm(수은주압)이상인 자, 맥박이 1분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질병관련요인 : ①전염병-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②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병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기타질병-발열, 인후

통, 설사 등 급성 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암환자, 만성폐쇄성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 적혈구과다증혈액질환,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요인 ①약물-보톡스,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을 투여 받고 1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혈소판 헌혈의 경우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1주,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 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또는 항암독소 등 동물혈청제제를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감마글로불린제제, 로감(RhIG) 등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 또는 혈액응고인자를 투여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에 아시트리틴을 투여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메토포렉세이트,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은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또는 뇌하수체 유래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

콕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 ②예방접종-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소아마비, 경구용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투여 받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성분채혈(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또는 백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요인-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B형간염확인검사(HBV 핵산증폭검사 및 중심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자. ② C형간염확인검사(anti-HCV 면역블롯검사 및 HCV 핵산증폭검사) 결과 음성인 자. ③ 후천성면역결핍증확인검사(웨스턴블

룻검사 또는 HIV핵산증폭검사) 결과 음성인 자.

6. 기타요인-제6조 제1호(헌혈자의 건강 진단)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 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채혈의 종류와 채혈량에 따라 각기 개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 ① 320ml 전혈 채혈시-16세미만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 혈액비중 1.053미만인 자 혈색소량이 혈액 100ml 당 12.5g 미만자 또는 적혈구 용적률이 38% 미만인 자,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 회수가 5회 이상인 자. ② 400ml 전혈채혈 -17세미만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 체중이 50kg 미만인 자,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ml 당 혈색소량이 12.5g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 미만인 자,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 회수가 5회 이

상인 자.

이상과 같이 채혈의 종류와 채혈량에 따른 개별기준사항을 구별하고 있다.

전염병 환자나 약물 복용환자 등 헌혈 부적격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8. 2. 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전염병 환자나 약물복용환자 등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채혈 금지 대상자는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고혈압환자, 만성질환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해 헌혈하기에 부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는 채혈금지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관리할 수 있게 된다. ☺